

부록 3 특례입학대상자(정원 외)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

1. 지원 자격(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라북도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에 의함

구분 (제 82 조 제 3 항)		자 격 요 건
제 1 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 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 2 호		다음 각 목의 1 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 2 호	가	외국의 학교에서 2 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 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 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 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제 3 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 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 4 호 (북한이탈주민 등)		제 97 조제 1 항제 3 호 또는 제 98 조의 3 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귀국학생 등의 해당자별 구비서류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 입학 대상자					비 고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정부초청 귀국 과학기 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全)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 외국학력 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 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학교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외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인쇄 등) 종전처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교 과정이 8학년제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 외국학력 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 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및 확인서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학교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외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인쇄 등) 종전처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유학 전 국내 최종 학교 재학(제적, 졸업, 정원외)증 명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까운 초·중·고 ○ 최종 재학년월일 및 최종 재학학년 명시
출입국 사실증명서	○ (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홈페이지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국가 행정구청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의 경우 제출
전(全)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청,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 전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 외국인 학생은 부모 중 1인이 한국인일 경우 제출
유치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 주무부 장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				○ 부모의 체류국 재외공관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또는 영주권 (시민권) 사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홈페이지 ○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동포자녀에 한하여 제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					○ (부,모, 학생)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홈페이지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 입학 대상자					비 고
	외국에서 초·중·고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정부초청 거국 과학기 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 해당 행정구청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 해당 행정구청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 해당 행정구청
정당한 해외출국 시 해외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 파견 관련 소속기관
예방접종 확인서	(○)	(○)	(○)	(○)	(○)	○ 거주지 관할 보건소 {(2016. 교육부 '학생 감염예방 종합대 책'(2016. 2.)}
학부모 확인서	○	○	○	○	○	○ 학부모 자필 확인서(서식 8)
외국 거주 기간 및 체류 확인을 위한 서류 (특례입학대상자 본인, 부, 모 제출)	(○)	○	(○)		(○)	○ 다음 중 택 1하여 제출 -해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 증명서 또는 해당국 임대차 계약서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해당 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해당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

1. 제3국 수확인정서: 국제 정세, 내전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의 체류국 재외공관에서 발행
2.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고, 영문도 학교에서 필요 시 한글로 번역하여 번역 공증 받은 후 제출
3. 교육부 홈페이지의 외국학력 인정학교 목록에 포함된 학교는 해당 목록부분을 인쇄하여 별도의 확인서 서식과 함께 제출하고 홈페이지 미탑재의 학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정규교육과정을 실시하는 학교임을 소명하거나, 종전처럼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
4. 구비 서류 발행처 등
 - 1) 출입국 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구청·동 주민센터, 민원24사이트
 - 2) 국내거소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동 주민센터, 민원24사이트
 -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동 주민센터, 민원24사이트
 - 4) 예방접종확인서-구비서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서류
-발행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발급 방법: 해외 거주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전산등록 요청 후 전산등록이 완료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 받아 학교에 제출

※ 위 내용은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처리 요령(교육부 고시제2015-70호,2015.8.28)」, 전라북도교육청 「2019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에 의거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입학 안내 사항 확인